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도 단위 이상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명장, 장인, 기능인에 대하여 명칭에 구애 없이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예우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대상 확대(안 제12조)

- 당초 : 구미시 최고장인
- 변경 :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

나.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준 신설(안 제13조)

-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

다.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 조항 정비(안 제14조)

라.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마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, 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」

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구미시최고장인”(이하 “최고장인”이라 한다)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미거주”를 “시 거주”로, “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제5호 중 “대구지역본부장”을 “경북지사장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1항 중 “최고장인”을 “시장은 최고장인”으로, “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”를 “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최고장인심사
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8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8조)제3항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, “해촉 된다”를 “해촉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8조) 제4항 중 “사무처리를”을 “사무를 처리하기”로, “1인을 두되”를 “1명을 두며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0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및 제20조로 하며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

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2조(예우대상) ① 시장은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,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숙련기술관련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
2. 「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
3.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최고장인 증서 수여 및 기술장려금 지급. 이 경우, 기술장려금 지급 기간은 매월 20만원씩 3년간으로 한다.
2. 창업을 할 경우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준하여 지원

3.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4. 각종 교육·훈련 시 강사로 초빙

② 시장은 제12조의 예우대상 숙련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

2.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

3.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

4. 선진지 연수 실시

③ 제2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,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간을 둘 수 있다.

제16조(중전의 제14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대해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적용배제) ① 시장은 예우대상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

2. 구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

3.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

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0조(중전의 제18조)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최고장인”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최고장인(이하 “최고장인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구미시최고장인”(이하 “최고장인”이라 한다)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
제3조(최고장인의 선정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구미거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. ②·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최고장인의 선정) ① ----- ----- <u>시 거주 -----</u> <u>--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-</u> ----- ----- 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제5조(최고장인의 추천) 다음 각	제5조(최고장인의 추천) -----

호의 자는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
본부장
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최
고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
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
장려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
려금은 매월 20만원씩 3년간으
로 한다. 다만, 구미지역의 산업
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,
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
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
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
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최고장인
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
야 한다.

④ 시장은 최고장인이 구미지역
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수
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
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
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경북지사장

<삭 제>

할 수 있다.

⑥ 최고장인으로서 민·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해년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숙련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최고장인-----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해당연도 -----
----- 해촉된다.

④ ----- 사무를 처리하기 --
-- 1명을 두며-----

기술자 양성업무 과장이 된다.

<신 설>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
결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
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
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
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
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
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-----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
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
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
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
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
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 필요--

<삭 제>

<신 설>

제11조 (생 략)

<신 설>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
게는 「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
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
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
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
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
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
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
지 않는다.

제10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제12조(예우대상) ① 시장은 지역
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
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, 예
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조제
1항에서 정한 숙련기술관련
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
2. 「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
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에 따라 선정된 자
3.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
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
정하는 자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

제12조 (생 략)

제13조(숙련기술자 우대) ① 시장

은 숙련기술자에게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각종 교육·훈련 시 최고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5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제13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

제3조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최고장인 증서 수여 및 기술장려금 지급. 이 경우, 기술장려금 지급기간은 매월 20만원씩 3년간으로 한다.

2. 창업을 할 경우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준하여 지원

3.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4. 각종 교육·훈련 시 강사로 초빙

② 시장은 제12조의 예우대상 숙련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

<신 설>

권 지급

2.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
예우

3.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

4. 선진지 연수 실시

③ 제2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
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
날부터 3년으로 하며, 시장이
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
간을 둘 수 있다.

제14조(적용배제) ① 시장은 예우
대상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
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
중단할 수 있다.

1.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
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
일으켰을 경우

2. 구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
사하지 아니하는 경우

3.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
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
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숙련기술
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
어야 한다.

제14조(숙련기술자 홍보 등 지원)

시장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제15조 (생 략)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

대하여는 「구미시위원회실비
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
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
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 (생 략)

<신 설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.

제16조(숙련기술자 홍보 등 지원)

-- 범위-----
대하여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

<삭 제>

제19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

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
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·단체
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
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
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
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
조례」에 따른다.

제20조(시행규칙) -----

- 필요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숙련기술장려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숙련기술"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.
2. "대한민국명장"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3. "기능경기대회"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,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제18조(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)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,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」

제9조(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) ① ~ ④ 생략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일시장려금 지급
2.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수여
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

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예우대상 숙련기술자에게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13조제2항제1호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예우대상 숙련기술자에게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내 용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1,000
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	50,000원×20명×1회	1,000

4. 작성자

- 노동복지과 고용지원담당 임 홍 섭 (054-480-6211)
- 노동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김 기 영 (054-480-6213)

소관 실·과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현 도
	담 당	임 홍 섭
	담 당 자	김 기 영 (480-6213)